

제 543 호  
1976.8.1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슌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간판실  
전화 75-6090

#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021 호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 3

○ 고 시

제 34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3  
제 37 호 : 서울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7  
제 38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일부변경승인..... 9  
제 39 호 : 동청사 위치변경고시..... 10  
제 40 호 : 동청사 위치변경고시..... 11  
제 41 호 : 서울도시계획(공원및공의지구)일부변경지적승인..... 11  
제 42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2  
제 43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7  
제 44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22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이면 계속)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038896

제 45 호 : 비로판매영업등록고시 .....	26
제 48 호 : 도시계획사업 ( 하수도 ) 완료공고.....	27
○공 고	
제 49 호 : 환지에정지 지정공고.....	28
제 50 호 : 김포포지구획정리사업인부변경인가 공람공고.....	28
제 51 호 : 76 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재정자금 집행요령공고.....	29
제 52 호 :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환지에정지 지정공고.....	31
제 54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공람공고.....	31
제 59 호 : 76 년하천골재 채취허가에정지추가공고.....	33
제 93 호 ( 영등포구공고 ) : 공인신조공고 .....	33
○예 규	
제 314 호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업무 ( 승인 . 복구 ) 지침.....	34
제 320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재정자금운용요강중 개정요강.....	45
○사 령 .....	46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준 인

76년 3월 10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021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둘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지하철본부현업기관근무공무원조정수당지급구분

구분	4급갑 기능직 6등급	4급을 기능직 7등급	5급갑 기능직 8등급	5급을 기능직 9등급	기능직 10등급	기능직 11등급	기능직 12등급	기능직 13등급	교무원
월수당 지급액	원 28,500	원 26,000	원 23,500	원 21,400	원 20,300	원 19,700	원 19,100	원 19,000	원 19,000

**부**            **칙**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3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 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 승인하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제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2.20

서울특별시

가. 노 선 조 서

구분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소로	1	1	10 m	480 <sup>m</sup>	성내동 365-2	답	성내동 259	답
"	1	2	"	120	" 259	답	" 231-2	전
"	1	3	"	380	" 399-1	답	" 356-1	잡
"	1	4	"	120	" 402-1	답	" 422-1	잡
"	1	5	"	120	" 402-4		" 401-3	답
"	1	6	"	210	길동삼 32-3	임	길·동 45-1	전
"	1	7	"	195	"		" 163-3	전
"	1	8	"	30	길동 232-32	전	구획정리경계	
"	1	9	"	110	" 255-2	임	길 동 32-32	임
"	1	10	"	386	" 260	전	" 319-1	대
"	1	11	"	150	둔촌동 87-2	도	둔 촌 77-2	도
"	1	12	"	430	" 88-2	도	" 114-2	도
"	1	13	"	80	" 148	답	" 144-2	도
"	1	14	"	290	"		둔촌동 70-2	답
"	1	15	"	285	" 167	답부근	" 68-1	대
"	1	16	"	20	" 62-3	대	" 62-6	대
"	2	1	"	218	성내동 401-3	답	성내동 226-17	전
"	2	2	"	130	길 동 48-4	답	길 동 49-1	답
"	2	3	"	15	"		" 48-4	답옆
"	2	4	"	210	길 동 232-1		" 163-3	답
"	2	5	"	290	" 221	전	" 182-2	답

구분	유별	번호	특원	연장	기	점	종	점	
소로	2	6	8	145	길 동	223	전	길 동 264-3	전
"	2	7	"	100	"	263-2	답	" 263-1	대
"	2	8	"	245	"	314	답	" 284-4	전
"	2	9	"	52	둔촌동	79-4	답	둔촌동 79-6	답
"	2	10	"	302	"	79-4	답	" 21	답
"	2	11	"	90	"	82-3	임	" 86-2	답
"	2	12	"	240	"	86-2	답	" 91-2	답
"	2	13	"	232	"	88-4	답	" 86-1	답
"	2	14	"	145	"	150-3	임	" 147-3	답
"	2	15	"	115	"	158	임	" 74	답
"	2	16	"	405	성내동	422-1	잡	성내동 376-7	답
"	3	1	6	45	"	19-5	답	" 36-1	전
"	3	2	"	122	"	256-6	대	" 236-2	잡
"	3	3	"	116	"	250	대	"	"
"	3	4	"	116	"	236-1	답	" 248	답
"	3	5	"	265	"	402-2	답	" 394	답
"	3	6	"	265	"	236-2	답	" 393	답
"	3	7	"	122	"	256-4	답	" 252	답
"	3	8	"	132	"	362	답	" 255	답
"	3	9	"	123	"	260-1	답	" 271	답
"	3	10	"	123	"	260-2	답	" 265	답
"	3	11	"	238	"	260-2	답	" 422-2	잡
"	3	12	"	128	"	358	잡	" 263	답

구분	종별	번호	종원	연장	기	점	연	장	
소로	3	13	6	455	성내동	272	진	성내동 348-2	잡
"	3	14	"	200	"	359-3	답	" 345-1	잡
"	3	15	"	213	"	362	잡	" 369-1	답
"	3	16	"	230	"	392-2	잡	" 373-3	대
"	3	17	"	240	"	391	답	" 375-1	답
"	3	18	"	114	"	365-1	답	" 348-1	잡
"	3	19	"	237	"	365-1	답	" 376-1	답
"	3	20	"	395	"	376-1	아래	" 348-1	잡
"	3	21	"	275	길 동 산	1-1	임	명일농구회정리제	
"	3	22	"	150	"	산 1-1	임	길 동 59	답
"	3	23	"	189	"	55	전	" 60	부근
"	3	24	"	95	"	55	전	" 산 3	임
"	3	25	"	82	"	산 3	임	" 산 53	임
"	3	26	"	557	"	37	전	" 산 1-1	
"	3	27	"	130	"	산 38-3	임	" 45-1	전
"	3	28	"	95	"	48-3	전	" 49	전
"	3	29	"	122	"	43	전	" 41	전
"	3	30	"	149	"	산 38-3		" 159-2	전
"	3	31	"	170	"	159-2	전	" 산 16	임
"	3	32	"	340	"	192-1	임	" 산 16	임
"	3	33	"	133	"	169-2	임	" 산 16	임
"	3	34	"	127	"	산 28		" 산 16	임
"	3	35	"	260	"	187	임	" 산 31	임

구분	류별	번호	복원	연장	기	점	종	점	
소로	3	36	6 m	52 m	길	유 219-1	담	길 동 187	담
"	3	37	"	234	"	183-3	전	" 172	전
"	3	38	"	190	"	195-3	전	" 182-2	담
"	3	39	"	75	"	185-1	전	" 183	담
"	3	40	"	125	"	227-1	전	" 232-2	전
"	3	41	"	113	"	205-2	대	" 309-1	담
"	3	42	"	240	"	261-1	대	" 314	전
"	3	43	"	125	"	261-4	대	" 산 48-1	임
"	3	44	"	80	"	48-1	임	" 216	전
"	3	45	"	130	"	산 2		" 산 48-1	임
"	3	46	"	1,249	"	218	담	둔촌동 135-1	담
"	3	47	"	125	"	302-1	담	길 동 296	담
"	3	48	"	115	"	300-1	담	" 288-2	담
"	3	49	"	120	"	301	담	" 289	담
"	3	50	"	325	"	298	대	둔촌동 83-1	대
"	3	51	"	322	"	314	전	" 80-1	전
"	3	52	"	115	"	316-5	대	길 동 294	대
"	3	53	"	289	"	317-12	잡	둔촌동 29-1	전
"	3	54	"	115	둔촌동	31-3	전	" 28	전
"	3	55	"	294	"	51-2	대	" 24-1	임
"	3	56	"	234	"	38-3	전	" 35-1	전
"	3	57	"	66	"	51-1	대	" 51-7	전
"	3	58	"	135	"	61-2	도	" 51-7	전

구분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중	점
소로	3	59	6 m	235m	둔촌동 82-8	임	둔촌동 17	건
"	3	60	"	53	" 87-6	건	" 86-2	담
"	3	61	"	234	" 89	건	" 91-2	담
"	3	62	"	93	" 88-4	건	" 86-2	담
"	3	63	"	482	" 115-2	건	" 19-2	잡
"	3	64	"	165	" 98-6	건	" 98-1	대
"	3	65	"	192	" 130	건	" 147-3	담
"	3	66	"	40	" 133-2	도	" 131	담
"	3	67	"	100	" 75-2	담	" 75-1	담
"	3	68	"	220	" 97-3		" 70-1	담
"	3	69	"	234	" 74	담	" 62-13	담
"	3	70	"	85	" 70-8	담	" 70-5	담
"	3	71	"	72	" 70-8	담	" 70-2	옆
"	3	72	"	95	" 62-4	담	" 62-13	대
"	3	73	"	117	" 168	건	" 72	건
"	3	74	"	102	" 70-13	담	" 161	임
"	3	75	"	103	길 동 331	건	구획정리계획	
"	3	76	"	39	둔촌동 70-2		둔촌동 70-25	
"	3	77	"	120	성내동 13-2		성내동 13-3	
"	3	78	"	140	" 29-1		" 27-2	
"	2	79	8	540	가양동 58-2		가양동 22-3	계
"	2	80	"	350	등촌동 12-5		가양동 20-1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끝.



<p>◎ 서울특별시고시제 37 호</p> <p>서울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p> <p>1. 건설부고시 제 8 호 (76.1.21) 로 변경 결정된 당시 및 경기도 관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가. 노선 조서</p>		<p>제 123 호 (73.4.4) 의 권한위임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1976. 3. 3</p> <p>서울특별시장</p>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대로	2	35	30	2,250	대1-21	도시계획구역제	선형조정으로
변경	"	2	35	30	12,250	광1-28		위치일부변경
기정	"	2	45	30	8,220	광1-18	대 2 - 35	"
변경	"	2	45	30	4,500	광1-28	대 2 - 35	"
기정	"	1	24	35	4,500	고척동	항동시계	폭원확장에 따
변경	"	1	24	35	2,700	오류동	항동시계	른 변경
변경	"	2	47	30	2,000	고척동	개봉동	
<p>※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p>								
<p>◎ 서울특별시고시제 38 호</p> <p>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일부변경승인</p> <p>1. 건설부고시 제 198 호 (71.4.7) 제 2493 호 (66.6.21) 및 제 680 호</p>		<p>(69.12.9) 로 시설 결정된 당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하여 지적일부 변경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가. 노선변경조서

게 보이게 한다.  
1976. 3. 3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대로	3 류	60	25	9,250	목 동	도 봉 동	기점부근위치
변경	"	"	60	25	9,250	목 동	도 봉 동	일부변경
기정	"	"	56	25	1,750	중암동	전 농 동	위치일부변경
변경	"	"	56	25	1,750	중암동	전 농 동	
기정	"	2 류	21	30	2,130	신촌동	사 천 교	위치일부변경
변경	"	"	21	30	2,130	신촌동	사 천 교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9 호

동청사위치변경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리봉동 사무  
소 위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

고시한다.

1976. 3. 1

서울특별시장

다 음

구 별	동 별	위		이 전 일 자
		변 경 전	변 경 후	
영 등 포 구	가 리 봉 동	영 등 포 구 가 리 봉 동 127-17	영 등 포 구 가 리 봉 동 123-11	76.3.1

○서울특별시고시제 40 호

동청사위치 변경고시

서울특별시도봉구수유2동 사무소 위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 고시한다.

1976. 3. 2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다 음

구별	동별	위 치		기전일자
		변경전	변경후	
도봉구	수유2동	도봉구수유동 370-2	도봉구수유동 270-67	76.3.2

1. 건설부고시 제 146 호(75.9.3)로 일부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공원 및 풍치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0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에 의거 이문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시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6. 3. 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고시제 41 호

서울도시계획(공원및풍치지구) 일부 변경 지적승인

가. 공원일부변경내역

공 원 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용 봉 공 원	성동구 금호·옥수동	725,015	(감) 47,320	677,695
대 방 도로 공 원	관악구대방동	48,074	5,670	42,404

나. 도시계획풍치지구변경(폐지)

위 치	변경(폐지)면적(㎡)	비 고
성동구옥수동 산 5-51 번지일대	30,682	옥수 3 지구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p><b>○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 호</b></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인가</p> <p>1. 건설부고시 제 177 호 ( 68.12.8 )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 73.4.4 )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76. 3. 6 서울특별시장</p> <p>1. 사업시행의 위치 : 종로1가 88-3, 종로1가 55 외 4</p> <p>2. 사업의 종류및명칭 : 새종로~종로 1가간 도로확장공사</p> <p>3. 사업규모 : B=40m, L=340m</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p> <p>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76.1 ~ 77.12.31</p> <p>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토지조서</p>
---	---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종로1가				55-1	도	12.8		서울시
2	"				55-4	"	44.9		"
3	"				55-6	"	6.8		"
4	"				55-3	"	2.3		"
5	"				55-7	"	12.9		"
6	"				55-5	"	2.4		"
7	"				56-1	"	3.2		"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8	종로1가				56-2	도	33.6		서울시
9	"				57-1	대	2.2	낙원동 95-1	황낙주
10	"				57-2	"	26.4	"	"
11	"				58-1	"	2.7	서대문구정동 16-1	최금준
12	"				58-2	"	36.0	"	"
13	"				59-1	"	1.3	종로1가 59	조창호
14	"				59-4	"	19.2	"	"
15	"				59-3	"	0.8	"	고정일
16	"				59-2	"	5.2	"	"
17	"				60-2	"	60.2	창성동 108-10	김영배
18	"				61-1	"	2.7	종로1가 61	최훈근
19	"				61-2	"	31.7	"	"
20	"				62-1	"	2.1	종로1가 62	이정애
21	"				62-2	"	31.3	청운동 39-30	김사봉
22	"				63-1	"	0.5	종로1가 36	고무정
23	"				63-	"	30.0	극초시중앙동 94	이기섭
24	"				63-3	"	12.0	종로1가 63	박재열
25	"				64-1	"	1.1	판훈동 28	김국환
26	"				64-2	"	36.6	봉의동 35-16	김인순
27	"				65-1	"	1.1	종로1가 65	신동국
28	"				65-2	"	17.5	"	"
29	"				66-1	"	1.0	종로1가 66	김인숙
30	"				66-2	"	15.3	"	"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31	종로1가				67-1	도	3.4		서울시
32	"				67-2	"	65.7		"
33	"				68-1	"	2.6		"
34	"				68-2	"	33.8		"
35	"				69	대	22.3	청진동 180	김종택
36	"				71-6	"	64.3	통의동 79	최상렬
37	"				72-1	"	5.0	소공동 116	조사방적 공업조합
38	"				72-2	"	65.7	72	서동섭
39	"				73-1	"	4.9	중구남대문로4가72	영화부동산 추식회사
40	"				73-2	"	31.9	"	"
41	"				74-1	"	5.5	청진동 200-1	김정세
42	"				74-2	"	33.0	77	"
43	"				75	"	15.2	75	박정일
44	"				75-1	"	1.3	"	"
45	"				75-2	"	4.0	"	김경숙
46	"				75-3	"	1.0	"	"
47	"				75-4	"	1.3		국
48	"				75-5	"	9.0	청진동 298	김복순
49	"				75-7	"	0.8		국
50	"				75-8	"	13.0	75	노영용
51	"				76-1	"	2.2	성동구금호동4가72	김정진외1
52	"				76-2	"	21.0	"	"
53	"				77-1	"	3.5	운이동 87-1	송필학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지목	주소	성명
54	종로1가				77-2	대	28.5	운이동 87-1	송필학
55	"				78-1	"	2.4	77	(귀백영사
56	"				78-2	"	17.7	"	"
57	"				79-1	"	4.9	"	"
58	"				79-2	"	27.3	"	"
59	"				80-1	"	2.2	"	김창건
60	"				80-2	"	13.8	"	"
61	"				81-1	"	4.8	사직동 286	박수규
62	"				81-2	"	45.2	"	"
63	"				82-1	"	0.8	창신동 283-29	최갑성
64	"				82	"	15.0	창신동 583-29	"
65	"				83-7	"	5.0		국
66	"				83-4	"	2.4	서린동 99	백남진
67	"				83-8	"	72.9	"	백흥진
68	"				83-5	"	0.4	"	"
69	"				83-9	"	31.8	"	"
70	"				83-6	"	0.5	"	"
71	"				83-10	"	31.7	"	"
72	"				84-1	"	0.1		서울시
73	"				84	"	12.0	동대문구휘경동 321	이찬명
74	"				85	"	17.0		박용석
75	"				85-2	"	14.3	86	유연옥

공사진물조서					
번호	소재지	구조	수용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종로1가 57	연와조	48.0	낙원동 92-1	황낙연
2	" 58	철근콘크리트연와조	93.0	인사동 117	최근섭
3	" 59	목조도단층	21.0	종로1가 59	조창호
4	" 60	연와조	52.0	반포아파트 89동 205호	김영배
5	" 61	"	60.0	종로1가 61	최섭근
6	" 62	"	68.0	청운동 89-30	김토학
7	" 63	목조와즙	19.0	도봉구변동 461-91	임진환
8	" 63-2	"	20.0	통의동 115	최활근
9	" 64	"	41.0	통의동 35-16	김인순
10	" 65	"	28.0	내수동22-2, 신당동351	김봉녀, 최순연
11	" 66	연와조와즙	17.0	종로1가 66	김인수
12	" 69	연와조	39.6	청진동 180	김희태외5
13	" 71	철근콘크리트	201.0	반포아파트103동104호	최상렬
14	" 72-1	목조와즙	51.8	종로2가 72	김판일
15	" 72	"	49.4	"	김영진
16	" 73	목조와즙 목조도단층	50.0	남대문로4가18-1	영희부동산(주)
17	" 74	연와조와즙	58.0	관악구상도동 59	김종호
18	" 75-1	목조와즙 목조도단층	11.0	청진동 298	김부순
19	" 75- <sup>2</sup> / <sub>3</sub>	목조도단층	4.0	종로1가 75-2	김경숙
20	" 75-1	"	11.0	종로1가 75	박정암
21	" 76-1	연와조	65.0	금호동4가 77	김연진
22	" 77-1	"	96.0	운이동 87-1	안필교



번호	소재지	구조	수용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23	종로1가 78	연 와 조	56.0	종로1가 77	주식회사박영희
24	" 78	"	49.0	"	진 학 저
25	" 80	목 조 와 좁	20.6	판악구상도동 59	김 진 호
26	" 81-1	연 와 조	80.0	종로1가 81	박 수 규
27	" 82	목 조 와 좁	21.0	창신동 58-29, 98	최갑성, 송명익
28	" 83	"	44.0	서린동 62	송 호 식
29	" 83-1	"	47.0	서린동 97	박 흥 진
30	" 84	"	12.0	휘경동 321	이 찬 영
31	" 85	"	12.0	가회동 162	최 영 광
32	" 86	연 와 조	14.0	종로1가 86-1	유 은 옥
33	87-2	목 조 와 좁	17.6	수유동 469-71	송 정 호
34	87-8	연 와 조	64.0	도영동 149-1	김 의 반
35	88-8	목조도단좁	29.0	"	

○ 서울특별시고시 제 4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 177 호 (62.12.11)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와 동법제 26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3. 6

서울특별시장

<p>1. 사업시행의 위치 : 용두동 147의4 계기동 1153 의 2</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안암로타 리~용두동간 도로개설공사</p> <p>3. 사업규모 : B = 25 m , L = 450 m</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p> <p>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76.1~77.10.31</p>	<p>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 지 : 별첨</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토지조서</p>
---	--

토 지 조 서 (전평수용부)

순위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용두 147-4	대	27	용 두 동 144-46	고 군 봉
2	" 145-5	"	31	송 인 동 70-5	지 한 욱
3	" -1	"	35	146-1	고 사 봉
4	" -12	"	44		최 승 곤
5	" -13	"	15		장 현 슬
6	" -16	"	13	신 설 동 26	삼 음 송
7	" 158-1	"	14		권 홍 식
8	" 159	"	27		김 주 혁
9	" 168-15	"	17		동치(정기망)
10	" -23	"	6	168 - 7	원 복 희
11	" 161-3	"	8	창 신 동 62	최 상 규

순위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12	용두 161-4	대	19	창신동 62*	최상급	
13	" 165-1	"	17	165-2	허용우	
14	" -2	"	15		심춘보	
15	" 185-2	"	57		장춘자	
16	" 191-2	"	29	교성군간성면신안리 342	전봉권	
17	" -3	"	75		김경희	
18	" 193-40	"	2		오영자 (이순이)	
19	" 148-75	"	18	안암 4지 43	이영모	
			계	19필지	469명	

토지조서 (일부수용분)

순위	지 번	분할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1	용두 147-1	147- 6	대	16		김방직	
2	" -5	- 7	"	22	성북동 136-1	이민웅	
3	" 146-3	146- 17	"	40		최병호	
4	" -4	- 18	"	32		김동균	
5	" -8	- 19	"	15	성북동 136-1	이민웅	
6	" -11	- 20	"	6		심보성	
7	" -14	- 21	"	3		최병호	
8	" -15	- 22	"	9		장현술	
9	" 158-2	158- 4	"	0.5		박양회 상술	

순위	지 번	분할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0	용두 158-3	158-5	대	10		김 숙희	
11	" 160	160-2	"	79		방영위	
12	" 161-1	161-5	"	7	161-1	임종철	
13	" -2	-6	"	15	161-1	"	
14	" 162	162-2	"	8.4		임규철	
15	" 154-1	154-3	"	5		최정희	
16	" 153-1	153-3	"	21		박재남	
17	" -2	-4	"	17		장운표	
18	" 163-3	163-7	"	5	관훈동 170	이종성	
19	" -5	-8	"	14	전남장석군지일면고택리	김재홍	
20	" -6	-9	"	21		김상균	
21	" 166	166-2	"	83		정두화	
22	" 170-4	170-5	"	8	170-4	신정옥	
23	" 185-1	185-4	"	50		동척하용 김하용	
24	" -3	-5	"	29		동척문자 강문자	
25	" 187-3	187-8.4	"	31		정금순	
26	" -4	-8.5	"	10		김성호	
27	" -5	-8.6	"	0.7		이명복	
28	" -9	-8.7	"	0.9	창신동 436	주원용	
29	" 186	186-2	"	39		김수광	
30	" 190-4	190-19	"	19	안암 5가 110-85	박우상	
31	" -5	-20	"	54		김봉초	
32	" -6	-21	"	17.2		김혜현	

순위	지 번	분할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33	용두190-9	190-22	대	19.4	내수동 101-11	김필용		
34	" 10	-23	"	3		이태국		
35	" 11	-24	"	9		박갑육		
36	" 14	-25	"	2		김명희		
37	" 15	-26	"	6		윤신하		
38	" 16	-27	"	1		이진구		
39	" 191-1	191-11	"	14		김현기		
40	" -4	-12	"	4		고성군간선면실안리 34		권오운
41	" -8	-13	"	0.5		백갑식		
42	" -9	-14	"	11.4		노경산		
43	" -10	191-18	"	28.2	조호학			
44	" 193-34	193-83	"	4	김영수			
45	" -41	-84	"	5	윤희수			
46	" -42	-85	"	3	이진규			
47	" -54	-86	"	316	서울시			
48	" -55	-87	"	17	이계진			
49	" -56	-88	"	13	조용석			
50	" -67	-89	"	9	이덕래			
51	제기동 148-64	149-121	"	0.9	경기도			
52	" -66	-122	"	0.4	김용석			
53	" -67	-123	"	4	권희택			
54	" -68	-124	"	1	심낙선			
55	" -69	-125	"	10	천병두			
56	" -112	-126	"	0.6	오인근			
57	" 1153-22	1153-26	"	0.6	대한주택공사			

○ 서울특별시고시제 44 호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 177 호 ( 62.12.8 )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 73.4.4 )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6. 3. 6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의 위치 : 용산구청파동 3 가 13 의 2 ~ 청파동 2 가 54 의 6 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청파동 ~ 효창운동장간 도로확장공사
3. 사업규모 : B = 15 m , L = 485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76. 4. 1 ~ 77.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토지 조서

토 지 조 서

청파동~효창운동장간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청파동3가	13	대	43	13-2	대	18.1	24-1	이춘화
2	"	14-1	"	66.2	14-1	"	66.2	"	이춘화
3	"	15-1	"	15.6	15-1	"	5.9	15-1	이상희
4	"	15-2	"	56.5	15-6	"	1.9	121-94	최용섭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5	청파동3가	21-1	대	251.8	21.12	대	203.8	21	이춘화
6	"	21-2	"	15	21-2	"	10.7	21-2	김명호
7	청파동2가	90-11	"	66	90-33	"	29.1	노량진동 266-1	김순이
8	"	90-21	도	32	90-34	도	9.1		구
9	"	90-19	대	21	90-35	대	20.6	90-19	백종학
10	"	90-22	"	16	90-36	"	12.4		서재혁
11	"	90-18	"	17	90-37	"	3.3	90-18	박성호
12	"	80-1	"	22.6	80-4	"	9.7	80-1	길병열
13	"	80-2	"	17.8	80-2	"	17.8	90	김봉운
14	"	80-3	"	33.6	80-3	"	17.8	행당동 286-12	박용택
15	"	79	"	15	79	"	2.7	79	김인기
16	"	81	"	26	81	"	25.2	81	강석규
17	"	84-3	"	47.3	84-4	"	22.0	한남동 84-3	김상섭
18	"	84-2	"	29.7	84-5	"	12.3	84-28	이상설
19	"	83	"	37	83	"	37	83	최기철
20	"	82	"	32	82-1	"	6.1	남강진군강진읍남성리 48	이철수
21	"	78	"	49	78-1	"	0.6	"	"
22	"	76-1	"	101.1	76-6	"	95.4	76-1	박기화
23	"	75-1	"	26.5	75-6	"	0.1	75-1	송희연
24	"	75-4	"	24.3	75-7	"	2.5	75-4	박수은
25	"	75-5	"	20	75-8	"	1.8	75-1	이춘훈
26	"	72-5	"	130	72-10	"	14.4	72-2	김홍범
27	"	71-8	"	83	71-101	"	39	71-8	정종석

순위	소재지	분할전 표시			분할후 표시 (수용대장)			소유주	자성명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28	청파동2가	71-10	대	27.7	71-10	대	27.7	71-15	김남윤
29	"	71-74	"	45.5	71-102	"	12.3	109-7	윤정근 외 3인
30	"	71-94	"	29.4	71-103	"	4.9	109-7	"
31	"	71-9	"	19	71-9	"	19	71-57	김형천
32	"	71-57	"	5	71-104	"	2.1	71-57	"
33	"	71-14	"	57	71-105	"	37.3	청파동3가 109-7	조운환
34	"	71-15	서사지	24	71-15	서사지	24	71-14	"
35	"	71-18	대	18	71-106	대	22.0	육인동산 3	박모심
36	"	71-21	"	16.5	71-21	"	16.5	71-22	송주섭
37	"	71-78	"	35.6	71-108	"	13.6		국외 1인
38	"	71-79	"	6.8	71-107	"	5.6		"
39	"	71-81	"	48.2	71-109	"	21		"
40	"	71-95	"	6.2	71-110	"	4.0		"
41	"	71-23	"	35.8	71-111	"	14.4	이촌동 296	김인숙
42	"	71-91	"	16	71-112	"	5.9	71-28	국금병인
43	"	71-25	도	14	71-113	도	2.8	"	"
44	"	71-90	대	41.5	71-114	대	0.5	91-90	윤덕애 외 6인
45	청파동3가	111-45	"	4.4	111-45	"	4.4	111	장상영 외 4인
46	"	111-6	"	4.7	111-6	"	4.7	111	배상영 외 4인
47	"	111-9	"	76.8	111-9	"	76.8	111-9	조봉길
48	"	111-4	"	10	111-4	"	10	111	표광현
49	"	111-3	"	15	111-70	"	10.4	111	장상영 외 4인
50	"	111-1	"	35	111-69	"	12.9	111	"



순위	소재지	분할전 표시			분할후 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수소	성명
51	청파동3가	111-2	대	6.6	111-2	대	6.6	111-9	경덕영
52	"	66-2	"	35	66-24	"	13.5	66-2	민형기
53	"	66-14	"	26	66-25	"	11.5	66	김운기
54	"	66-15	"	11.8	66-21	"	5.0	66	허용번
55	"	66-8	"	8.3	66-27	"	0.6	67	장영환
56	"				66-28		4.4	67	"
57	"	66-12	"	1	66-12	"	1	67	"
58	"	65-6	"	0.2	65-6	"	0.2	63-5	김도희
59	"	65-5	"	0.4	65-5	"	0.4		경성부
60	"	65-7	"	0.3	65-7	"	0.3	63-5	김희영
61	"	65-3	"	0.2	65-3	"	0.2	63-5	"
62	"	65-1	"	0.2	65-11	"	11.2	65-1	김현철 박경옥
63	"	63-15	"	3	63-15	"	3	65-1	"
64	"	63-5	"	15.7	63-23	"	2.3	63-5	김희영
65	"	63-4	"	20.2	64-24	"	9.5	60-4	강진
66	"	64-1	"	18	64-36	"	15.2	청파동3가118-11	이준기
67	"	64-2	"	1	64-2	"	1	"	"
68	"	64-16	"	2.1	64-16	"	2.1	64-3	전우성
69	"	64-17	"	2.1	64-37	"	0.6	3가118-11	이준기
70	"	64-3	"	55.9	64-38	"	29.5	64-3	전우성
71	"	64-20	"	4.6	64-20	"	4.6	64-3	"
72	"	64-21	"	4.3	64-21	"	4.3	63-20	이순이
73	"	63-20	"	68.8	63-25	"	4.8	63-20	"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74	청파동2가	64-5	대	1	64-6	대	1	63-20	이순이
75	"	63-21	"	38.7	63-26	"	0.2	63-21	송춘자
76	"	64-26	"	22.6	64-34	"	19.7	"	"
77	"	64-27	"	15.4	64-35	"	7.7	63-3	오학근
78	"	55-1	"	42	55-14	"	16.9	55-1	이일순
79	"	55-5	"	20	55-15	"	15.1	55-5	김춘식
80	"	55-6	"	14	55-6	"	14	종로구예지동 73	장태선
81	"	55-9	"	50-7	55-16	"	28.5	55-9	피노원
82	"	54-1	"	13	54-1	"	13	53	변전미오
83	"	53	"	200	53-2	"	7.4	53	"
84	"	54-5	"	16	54-5	"	16	53	"
85	"	54-6	"	3	54-6	"	3	청파3가 85	주식회사 교양정미소
		총 계		85필				1,309.6명	

◎서울특별시고시제 45 호

비로 판매 영업 등록 고시

비로단속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로 판매 영업등록을 하였기 고시한다.

1976 년 3 월 8 일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등록 또는 교부년월일	판매자 주소·성명 및 판매장 소재지	비로의 명칭	보증성능량
서울 2-1	76.3.8	1.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천호동 391-277 2. 판매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천호동 417-3	제 5 중부합비로 (액체비로) (일명·복합)	농수산부고시 제 2518 호에 의한 공정 규격

**○서울특별시고시제 48 호**  
**도시계획사업(하수도)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2 호 ( 75.12.28 ) 로 실시 계획 인가된 바 있는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공사완료)을 도시계획법 제 85 조 1 항 및 동법 제 46 조 3 항의 규정과 전선부고시 제 123 호 ( 73.4.4 )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본 사업실시에 따른 공공시설은 도시계획법 제 83 조의 4 항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무상 귀속 조치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하수과 및 도봉구청, 성북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년 3월 5일  
 서울특별시장 인

귀 속 제 산 명 세

당 초 지 번	분 할 등 재 지 번	지 목	평 수	비 고
장위동 270-1	장위동 270-40	천	10,752	
월계동 479-1	월계동 42-3	·	59	
	월계동 479-4	·	1,179	
수유동 605-185	수유동 605-188	·	1,064	
수유동 630	수유동 630	·	895	

1. 사업시행의 위치 :

가. 장위지역 : ( 장위동 염광중상고앞-우이천 하류 버스종점 )

나. 수유지역 : ( 수유동 445 - 37 - 한신국민학교앞 )

( 수유동 502 - 1 - 수유동 117 - 2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장위지역 하수도공사

나. 수유지역 하수도공사

- 3. 사업의 규모
-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장위지역 75.3.6 - 75.12.31
  - 나. 수유지역 75.3.3 - 75.12.31
- 6. 준공도면: 준공인증도면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49 호

환지역정지지정공고

- 1. 영동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의 3개지구 (잠실, 천호, 영동추가지구) 내 환지역정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있어, 서울특별시 공고 제 22 호 (76.2.4) 로 환지역계획 변경 공람 공고한 바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와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제 1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역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역정지를 변경

지정하였기 공표합니다.

- 2. 환지역정지 변경도서는 당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에 공합니다.
-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면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1976년 3월 5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50 호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  
일부변경인가공람공고

- 1. 건설부공고 제 15 호 (76.2.27) 로 사업변경인가 공고된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
-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와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6. 3.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 개요 1) 사업명 : 김포토지 구획정비사업 2) 시행지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곡동 일부 3)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4) 편경사함(용도별 면적)	
단위 :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4,706,335	4,706,335	
택 지	3,051,697	3,094,621	증 42,924
채 비 지	297,727	300,332	증 2,605
도 로	1,052,795	1,058,198	증 5,403
저 수 지	50,932	-	감 50,932
수 로	19,322	19,322	-
학 교	75,339	75,339	-
시 장	20,509	20,509	-
공 권 원	31,159	31,159	-
광 장	76,132	76,132	-
유 수 지	30,723	30,723	-
3. 이 공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겠으나 송달이 되지 않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같음 합니다.		197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 세정자금 집행요령 공고 197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세정자금 집행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6. 3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51 호			

<p>1. 재 원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재정자립</p> <p>2.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나. 제조업을 영위하며 다. 준공업지역의 공장건물로서 라. 공해방지법 제4조에 의한 배출 시설 허가를 필하고 마.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조합원인자로 한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기업자와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자를 포함한다)</p> <p>3. 자금의 용도 운전자금</p> <p>4. 지원 내용 지원 한도액 : 운전자금 10,000,000원 이내 금 리 : 년 15.5 % 융자기간 : 2년 (6개월 거치 1년 6개월 분할상환)</p>	<p>5. 신청서류 가. 신청서 (산업국 공업과에서 배부)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영업자 납세자번호증사본 1부 라. 협동조합 가입확인서 1부 마. 생산실적증명 (수출업체인 경우 수출실적 완료증명) 1부 바. 공해배출시설 허가증사본 1부 사. 대지증명 1부 아. 가옥대장 1부</p> <p>6. 신청기간 및 장소 수사로 서울특별시 산업국 공업과에서 접수</p> <p>7. 지원대상 결정 가. 실태조사와 서울특별시 재정자금 융자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과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중소기업은행장 및 당해업체에 통보한다. 나. 가항에 의한 융자대상업체 선정은 융자신청서가 있을 때 마다 수시 선정 한다.</p>
--	---

○ 서울특별시공고제 52 호

주택개발을위한제개발사업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

1. 건설부고시 제 294 호 (74.8.30) 로  
사업실시 인가되어 서울특별시  
공고 제 217 호 (75.9.16) 로 관리  
처분 계획 공람공고된 한남제 1구  
역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41 조  
및 건설부고시 제 302 호 (74.9.6)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 6 조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6 조 규정에 의거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발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게 하며 따로 개별 통지  
할것이나 미 수명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

1976.3.9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명: 주택개발을 위한 제개발

사업 한남제 1구역

나. 시행위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9 조에 의한 행위 허가지역  
다. 지정의 효력시기

- 1) 합편환지 계획된것에 대하여  
는 이 공고이후로 환지 예정지  
지정(분할)을 완료하고(분할  
동의서에 의함)
- 2) 개이 470-476 호 (75.9.24)  
로 부담금액 납부 촉구된  
부담금액 할부 계산서에 의한  
해당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사용  
수익권이 부여됨. 끝.

○ 서울특별시공고제 5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공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 738 호 (63.12.24)  
및 제 198 호 (71.4.7) 고시된 성산  
제 2 교 가설공사 구간내에 저촉되  
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  
에 공한다.

<p>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76.3.11</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p> <p style="text-align: center;">공 랫 개 요</p> <p>1. 사업시행의 위치 : 마포구 성산동 56-94 (사천교 하류)</p> <p>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성산제 2교 가설공사</p>	<p>3. 사업의 규모</p> <p>(1) 교량공사 - B=25m L=75m</p> <p>(2) 접속도로 - B=20m L=400m</p> <p>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p> <p>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 : 75.12.19 - 77.2.28</p> <p>6. 사용토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 조서</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설명 : 별첨.</p>
--	--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 유 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마포구성산동	95-7	도	38	95-7	도	21		서울시
					-8	"	17		"
		95-3	담	1007.8	95-3	담	696.6		이진우
					-9	"	311.2		"
		94-4	담	369	94-4	"	101		이기범
					-5	"	268		"
		94-2	하천	1041	94-2	하천	554		국
					-6	"	15		"
			-7	"	472	"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마포구성산동	96-2	하천	110	96-2	하천	229		국	
-10					"	797	"			
-11					"	84	"			
96-9		구	269	96-9	구	193	시유			
				-12	"	76	"			
98-1		하천	222	98-1	하천	147	국			
				-2	"	75	"			
				93-1	하천	207	93-1		하천	146
						-3	"		51	"

○ 서울특별시공고제 59 호

1976년하천관리계획취허가예정지  
추가공고

서울특별시 1976년 하천관리계획취  
허가예정지 추가지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76년3월10일

서울특별시장

1. 하천명 : 한강 (서울특별시관내)
2. 지역및 면적 : 잠원지구 195,000 평  
(500,000㎡)

서빙고지구 100,000 평 (300,000㎡)

3. 지역별위치도 : 별첨도면과 같음
4. 위치도열람 : 관할구청.

○ 영등포구공고제 93 호

공인신조공고

영등포구 구로제1농장의 적인 및  
제인을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함

1976. 3. 8.

신조공고사용계시일 76.3.9 09:30부터

개각공고인영

구로제1농장  
장인



제  
인



예 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업무 (승인, 복구) 지침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6년 1월 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출

◎서울특별시에규제 314 호

서울특별시도로굴착업무 (승인, 복구) 지침

1. 목 적

가. 도로굴착 승인업무의 조정으로 합리적인 도로관리

나. 도로관련 사업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다. 도로굴착원인자의 신청으로 계획적인 도로관리

라. 도로굴착 복구업무의 조정으로 신속 정확한 복구

2. 도로굴착승인방침

가. 본 칙

- 1) 도로폭 15m 이상으로서 도로상의 연장 500m이상의 굴착 (콘크리트, 보도부벽) 굴착
- 2) 2개구침 이상에 걸친 굴착
- 3) 각 구침에 공히 해당하는 특수사업의 굴착 (예: 녹지사업등)
- 4) 아스팔트 굴착면적 100㎡ 이상되는 굴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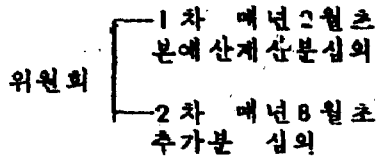
나. 구 칙

본칙 승인분을 제외한 도로상의 굴착

- 1)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력, 전화의 긴급보수등 요하는 일체의 굴착
- 2) 제2호 "가" 목 이외의 콘크리트 및 보도부벽 굴착
- 3) 아스팔트 굴착면적 100㎡ 미만의 굴착
- 4) 굴착현장의 지시감독은 관할 구청장 책임하에 행한다. (본칙 승인분 포함)

3.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및 공 고

가.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나. 신청공고 및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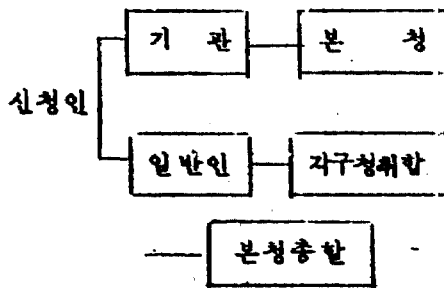
1회 ~ 12월공고 ~ 1.1 ~ 1.31

접수 (31일간)

2회 ~ 6월공고 ~ 7.1 ~ 7.31

접수 (31일간)

다. 신청절차



4. 굴착승인규제방침

가. 매년 2회의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에 홍보된 사업으로서 위원회에서 조정된 기간에 한하

여 승인한다.

나. 매년 2회의 공고에 의한 신청분에 한하여 승인한다.

다. 포장공사시행후 만1년간은 굴착을 통제한다.

라.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게 한다.

마. 가공선로는 지하화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시설물은 단계적으로 지하화로 유도한다.

바. 굴착공사 시행기간은 당해 회계년도에 한하여 승인 실시한다.

사. 전기 (7월~8월경)와 동절기 (12월~익년 2월경)는 굴착을 통제한다.

아. 도심지 간선 및 교통혼잡지역의 굴착은 야간작업을 원칙으로 승인한다.

자. 사업시행전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완비 제출토록 하여 승인한다.

구 비 서 류

1) 도로굴착신청서 (별첨양식 1)

1부

2) 명면도 (굴착단면도 첨부)

2부

3) 위치약도 3부

차. 공사장 시종점에 안내판을  
게첨한다.

5. 누락분 처리

가. 각 기관의 추가사업분은 시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승인한다.

나. 공고에 의한 신고누락분중  
뒷팔목의 소규모 (12m 미만  
의 개인 건축등) 굴착은 수  
시 승인한다.

6. 굴착복구방침

가. 본침 : 100㎡ 이상의 아스팔  
트포장의 복구

나. 구침 : 1) 콘크리트포장 및  
보도부력 포장의  
복구 일체

2) 긴급굴착의 아스팔  
트 포장복구 (사업

소에 협조복구)

7. 행정처리 절차

가.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 개최  
는 본청에서 주관한다.

나. 도로굴착승인 신청공고는 본  
청에서 공고한다.

(공고안 별첨양식 2)

다. 신청접수는 제3호 '다' 목  
에 의하나 타분의 신청도 접  
수하여 해당 부서에 송부하여  
야 한다.

라. 공고에 의한 접수분은 월별  
동별로 취합 그 1부를 본청  
(도로보수과)에 2월초~8월  
초한 송부한다. (별첨양식 3)

마. 굴착승인시 본청 승인분이  
접수되었을 경우 현장조사서  
및 위치약도 2부를 첨부 본  
청에 전달한다 (별첨양식 4)

바. 굴착승인서는 각부서에 적합  
한 부관을 명시 조건부 승인  
한다.

사. 굴착복구는 제6호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별첨양식 5)

<p>아. 각구청에서는 매월 보고를     익월 10 일까지 보고한다.     ( 별첨양식 6 )</p> <p>자. 각구청에서 승인한 것은 위치     도 첨부 이를 즉시 본청에 보     고한다. ( 별첨양식 7 )</p> <p>1. 도로굴착에 관한 일체의 업     무는 본지침에 의한다.</p> <p>2. 각작장소는 구청과 동일하다.</p>	<p>8. 포장 416-35(70.1.10)     보도부력 굴착승인 및     복구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예규집 971 페이지     수록 )은 이 지침 적용일과 동     시에 제지한다.</p> <p>9. 이 지침은 197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p>
양식 1	
도    로    굴    착    신    청    서	
주          소	
성명(기관명)	
아래와 같이 도로를 굴착코저 신청합니다.	
굴    착    장    소	
굴    착    목    적	
굴    착    규    모	연    장                                폭                                변    적
굴    착    시    기	1976. . . . 1976. . . . (일간)
굴착포장종류	
기          타	
1976. . . .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양식 2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서울특별시도로굴착승인신청공고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굴착하여 지하시설물(상.하수도 건  
력, 전화케이블, 가스관등)을 내설코  
자 할 때에는 도로법 제34조에  
의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서울시 행정구역에 있  
는 모든 도로의 굴착

2. 신청기간: 1차: '76.1.4~1.31  
2차: '76.7.1~7.30

3. 구비서류: 1) 신청서 2부(본청  
도로보수과 및 각  
구청 토목과에 비치

2) 위치약도: 2부

4. 접수처: 공공기관~서울특별시  
도로보수과

일반인~관할구청

토목과

5. 특기사항: 1) 위 기간내에 신청  
하고 공사시행에 별  
도로 당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2) 전기, 상수도, 하수  
도등 공공기관에 의  
뢰 도로를 굴착하게  
되는 사항도 수용가  
인 일반인이 필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3) 위 기간에 신청하  
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굴  
착승인을 할 수 없  
아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출

0406

양식 3

도 로 글 작 신 청 접 수 부

글작성기	글작목적	신청인주소성명	글작 위치	개 요				비 고
				포장종류	연장	속원	면적	

※ 기 재 요 령

1. 기관인, 양면, 필필로 접수부활 작성
2. 글작성수순으로 기재
3. 실세는 포장종류별로 견수, 연장, 속원, 면적외 필수제 기재
4. 글작성 위치 ○ ○ 동 ○ ○ 번지 ~ ○ ○ 번지간

제 543 호

시

보

1976.3.10 47-39

2011

양식 4

현 장 조 사 서

구분 목적	구좌위치	신청자	도로폭	매설물 규정	포장 종별	구좌개요					포장시공 시기	비고
						연장	폭	면적	단가	금액		
계												

조사자의견

조사자 직

성명

인

귀하

인

47-40

제543호

시

보

1976.3.10



양식 5

굴착복구작업 개사외역 내역

수신 :

굴 착 나 역					복 구 자 사 내 역			
위 치	포 장 종 류	연 장	굴 착 일 시	시행청	(부순돌, 세석) 기 층 공	안정처리 중 층 공	표층공	기타

위 치 약 도

양식 6																		
1. 도로굴착 승인현황																		
처리일자	위치	목적	포장 종별	굴착개요			조정액	남부일	남부액	비고								
				길이	폭	면적												
계																		
2. 도로굴착조정 및 징수현황																		
조정현황						징수현황						미징수현황						비고
전월까지 조정액		금월조정액		계		전월까지 조정액		금월조정액		계		전월까지 조정액		금월조정액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7-42 제 543호 시 보 1976.3.10

0408

3. 골확부구현황													
포장종별	골확승인사항			부구사항			미부구사항			부구비 배정액	부구비과부족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부구비잔액	부구비부족액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부닥													
기 타													
계													
4. 승인지침현황													
지 침 건 수				미 지 침 건 수				비 고					
5. 무단골확 행위현황													
무단골확 적발건수				과태료징수액				비 고					

계 543 호

시

보

1976.3.10 47-43

277

양식 7

굴 착 승 인 보 고 서

수신 : 서울특별시

참조 : 도로보수과장

승 인 내 역						비 고
위 치	포장종류	연 장	굴착일시	시 행 청	복구일시	

위 치 약 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채정자금운  
용요강중 제정요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6. 3.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 서울특별시에규제 320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채정  
자금운용요강중 제정요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채정자금  
운용요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용자대상 집행절차) ①자금  
의 용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공장등록을  
필한자
- 나. 제조업을 영위하는자
- 다. 준공업지역의 공장건물로 운영  
하는자
- 라. 공해방지법 제 4 조에 의한 배  
출시설 허가물 필한자
- 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기업자와 협동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자를 포함한다.  
②이 요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집  
행 요령은 별도 공고에 의한다.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용자조건) 이자금의 용자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대출한도 : 10,000,000 원이내
- 2. 금 리 : 년리 15.5 %
- 3. 용자기간 : 2 년 ( 6 개월 거치  
1 년 6 개월분할 상환 )

제 7 조중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대출절차는 은행의 정하는 바에  
의하되 서울특별시와 사전협의하여  
야 하며 대출중인 시설자금은 회  
수되는대로 전액운전자금으로 전환  
운용하여야 한다.

제 8 조중 제 2 항, 제 3 항 및 제 6 항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운전자금의 대하금리는 년리  
13.5%로 하고 대하기간은 5년  
기간으로 연장 갹신 대하한다.
- ③대하금에 대한 이자는 세입조치  
하지 아니하고 대하금으로 증액  
운용하여야 한다.

④기타 대하에 따른 필요한 사항  
또는 대하금을 회수할 시는 사전

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자금의 회전대출) 대하기간에 관계없이 자금을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에 의하여 회수된 자금의 범위내에서 회전 대출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변경의 승인) 자금의 대출을 받은 업체가 그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 운영 내용에 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을 상호 통보하며 은행장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요강은 75.11.18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요강 시행이전에 기허대하 대출된 자금중 시설자금의 대출금리 및 대하이자는 종전요강에 준한다.
3. (적용) 제8조 제3항의 규정은 1976.1.1부터 적용한다.

사 령

◎ 1976.3.2

도 봉 구 부이사관 한 백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1월에 처함.

도시시설과 지방토목 기사보시보 김원배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6.3.3

사 회 과 지방행정사 추경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호에 의거 휴직을 명함.

◎ 1976.3.4

상북구보건소 지방행정사 부관 이복용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6.3.6

관 악 구 행정주사보 김기정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p>3호의 규정에 외거 그직위를 해제함.</p> <p>◎ 1976.3.8</p> <p>도로시설과 지방전기 기사보 박정구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3 항의 규정 에 외거 휴직을 명함.</p> <p>국립경찰병원 간호기원보 김진주 서울특별시 진입을 명함. 지방간호 기원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성동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위생연구소 지방약무 기과관 오영근 지방보건연구관에 입함.</p> <p>남부병원 지방보건 연구관 김석주 지방약무 기과에 입함.</p>	<p>◎ 1976.3.9</p> <p>아 동 과 서 기 관 년 회 남 보건사회국 부녀과장에 포함.</p> <p>소년직업 지방행정 김용아 보도소 사무관 보건사회국 아동과장 직무대리를 명함.</p> <p>◎ 1976.3.10</p> <p>안양군 지방외무 기정 시모에 임함. 초임 호봉을 급함. 도봉구보건소장에 포함.</p> <p>사 회 과 지방행정 김형욱 주 사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2호의 규정에 외거 그 직위를 해제함.</p>
<p>서 울 특 별 시 장</p>	